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www.odmc.or.kr

위원회 소개, 분쟁조정제도 및 절차 소개, 분쟁조정 신청 및 문의,
분쟁조정 사례 및 관련동향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원활한 분쟁 조정 업무를 위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내에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위원회 사무국**
- 분쟁조정 신청접수 및 사실조사
 - 분쟁조정위원회 활동 지원
 - 분쟁조정 제도 홍보, 교육, 상담
 - 국내/외 분쟁조정기구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

Tel : 02-2131-0878 Fax : 02-2131-0881
e-Mail : odmc@nia.or.kr

국민들이 체감 할 수 있는
공공데이터 개방,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가
함께 하겠습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나누자 데이터, 누리자 행복!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



안전행정부
공공정보정책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Tel. 02-2100-1842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 NIA빌딩
Tel. 02-2131-0114
http://www.nia.or.kr



ODMC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14 NIA빌딩
Tel. 02-2131-0878
http://www.odmc.or.kr



안전행정부



NIA
한국정보화진흥원



ODMC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Open Data Mediation Committee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무엇을 해결해주나요?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절차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 제도란?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이 강조됨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의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이 발생하였을 때, 국민들이 복잡한 행정소송을 하지 않고 간단한 분쟁조정 절차만으로 데이터의 이용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

공공데이터제공 분쟁조정위원회는

이용자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용자와 공공기관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문제 해결을 돕고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1조와 제32조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과 조정을 진행합니다. 분쟁조정의 신청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 홈페이지, FAX, 전화, 전자우편, 방문을 통해서 접수 할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중단을 통보 받은 이후 60일 이내에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가능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및 분쟁조정신청 절차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31일부터 「공공데이터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입니다. 구성원은 위원장 1명,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부교수급 이상 교수, 법조인, 시민사회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등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Q 공공기관에서 공공데이터를 PDF파일로 제공 받았는데, excel 등 가공 가능한 형태로 얻을 수 없나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이 이용자에게 공공데이터를 활용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자유롭게 이용할 권한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Q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공데이터를 개발자의 계획(수요, 의사)대로 가공하여 서비스할 수 있나요?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공공데이터를 재활용(가공)하여 상업적인 서비스 운영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공데이터를 이용한 부가가치 있는 신규서비스의 제작 유통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입니다.

Q 공공데이터인 정부간행물(부서, 연구보고서 등)이 공공데이터의 개방 대상인가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정부간행물은 공공데이터 제공 대상으로 봅니다.

다만, 정부 간행물 등에 일부라도 저작재산권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데이터 제공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분쟁 조정 내용은 「공공데이터제공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9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